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웅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8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1명)

찬 성 자 : 문장길, 김경영, 권영희,
오현정, 김제리, 홍성룡,
김호평, 박순규, 이광호,
김상훈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양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유도하는 한편,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물순환 회복을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정의(안 제2조)

다. 가뭄재해대비, 지하수 함양 및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토록 함(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라. 구청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으로 하고, “규정하여”를 “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중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를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으로 한다.

제15조 중 “빗물침투를 통한”을 “빗물침투 및 유출지하수를 통한”로 한다.

제16조 중 “물관리시설 설치 등의”을 “빗물처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2항 중 “빗물관리시설의”를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빗물관리시설을”을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4호 중 “빗물관리시설을”을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u>환경정책기본법</u>」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u>규정하여</u>,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u> <u>등</u> ----- ----- ----- ----- ----- <u>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14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u>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u>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p>	<p>제14조(가뭄재해대비) ----- ----- ----- -----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u> -----.</p>
<p>제15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p>	<p>제15조(지하수의 함양) -----</p>

현행	개정안
<p>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u>빗물 침투를 통한</u>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p> <p>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u>빗물관리시설 설치</u>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p> <p>제34조(재정지원) ① <u>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빗물관리시설의</u>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1. (생략)</p>	<p>----- <u>빗물 침투 및 유출지하수를 통한</u> -----</p> <p>-----</p> <p>-----</p> <p>-----</p> <p>-----</p> <p>-----</p> <p>-----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u> 등의 -----.</p> <p>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p> <p>-----</p> <p>-----</p> <p>-----</p> <p>-----</p> <p>-----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u> 등의 -----.</p> <p>제34조(재정지원) ① <u>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②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정당한 사유없이 <u>빗물관리시설을</u>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생략)</p> <p>4. 사전협의 없이 <u>빗물관리시설을</u> 무단 철거한 경우</p> <p>④ (생략)</p>	<p>2. -----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u> -----</p> <p>3. (현행과 같음)</p> <p>4. ----- <u>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u> -----</p> <p>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재정 지원)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용

나. 전제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규모 및 설치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할 것이나, 공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므로 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
 - 조례안에 따르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지원대상은 공공의 경우로 한정
- 유추지하수 이용시설은 설치지역 및 규모에 따라 공급 및 정수시설, 배관시설, 화장실 연결 시설 등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다양하며, 현재 유추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개수 등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19년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개수(3개소)를 적용하여 비용 추계
 - '19년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은 3개소(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진행 예정
 - 향후 동일하게 연간 3개소씩 지원하는 것을 가정
- 비용은 우선설계가 완료된 양천공원의 공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
 -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실시설계 중 양천공원은 '19.08월까지 우선 설계 완료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양천공원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적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8,463,000천원(연평균 1,692,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세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용 (안 제34조)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8,463,000
	소계(b)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8,463,000
□ 총 비용(b-a)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1,692,600	8,463,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총 지원비용 ≒ 8,463,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설치를 위한 지원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용

= 연간 지원 대상 수 × 개소당 공사비용

= 3개소 × 564,200천원

= 1,692,600천원

※ 연간 지원대상수 : 3개소, '19년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개수 적용

※ 개소당 공사비용 : 양천공원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설치 공사비용 적용

= 유출시점부터 공원인입부 설치비용 + 공원 내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설치비용

= 147,000천원 + 417,200천원

= 564,200천원

	구 분	규모	예상금액(천원)	비 고
1	유출시점부터 공원인입부 설치비용	1식	147,000	
2	공원 내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설치비용	1식	417,200	
총공사비			564,200	제잡비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019.10)

- 유출시점부터 공원인입부 설치비용 : 147,000천원

	구 분	규모	예상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1	공급 및 정수시설	1식	75,000	관정부연결 및 정수시스템	10HP
2	배관공사	1식	30,000	250m×120,000원 포장복구 및 연결철물포함	80A
순공사비			105,000		
제잡비(40%)			42,000		
총공사비			147,000		

자료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019.10)

• 공원 내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설치비용 : 417,200천원

구분		규모	예상금액 (천원)	산출내역	비고
1	배관공사	1식	50,000	1,000m×50,000원 연결철물포함	
2	화장실 연결공사	2동 (건축물/키지트) 건축물 상부포함	45,000	건축물 1개소 신규 키지트(지하) 추가관로공사	15A
3	녹지관수 공사	1식 (17,143m ²)	60,000	17,143m ² ×3,500원 녹지전체면적 평균산정	50A
4	점적배관 공사	1식 (3,125m ²)	50,000	3,125m ² ×16,000원 잔디광장 하부점적시스템	25A
5	실개천 인입공사	1식	20,000	배관 : 200m×50,000원 인입설비 및 녹지복구	25A
6	부대공사	1식	73,000	자동화판넬, 전기공사, 온습도센서	전자 시스템 포함
순공사비				298,000	
제잡비(40%)				119,200	
총공사비				417,200	

자료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019.10)